

DDA농업협상의 흐름과 동향

— 2015년 상반기 제안서를 중심으로 — *

윤 동 진
(주제네바대표부 농무관)

1. 들어가며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발한 DDA(Doha Development Agenda, DDA)협상은 14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1986년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4년 최종 타결에 이른 점을 비교할 때,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2002년 타결, 2004년 발효) 이후 동시 다발적인 FTA를 적극 추진하여 WTO 다자 무역협상 지체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장 개방을 계속 확대하여 왔다. 최근 미국 주도하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등 단일국가를 넘는 지역 간 특혜무역협정 역시 WTO 다자간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DDA 협상은 교착되었으며, 조기 타결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최근 제안서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세부내용과 전략을 공유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협상의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dongjin.yoon@gmail.com).

2. 2001년에서 2015년까지의 DDA협상 전개 과정

DDA협상은 상품(농산물/비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포괄하며 그 밖에도 규범, 분쟁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 또한 전체 회원국이 모든 분야의 협상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을 택하고 있다. 각 분야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DDA협상에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는 DDA협상 전반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농업협상에 관한 것이다. 즉, DDA협상에서의 농업협상은 DDA의 목표 수준과 속도를 결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4년은 긴 시간이지만 같은 밀도와 비중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다. 협상을 도입, 전개, 소강, 절정 등 국면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훗날 2015년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1년 11월, WTO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된 당시 상황은, 연일 9.11 테러 뉴스로 도배되고 있었다. 1995년에 새로운 국제기구로 탄생한 WTO는 초기에는 뉴 라운드(제9차 다자무역협상)를 1999년 제3차 WTO시애틀각료회의에서 출범시키려 했으나, 반 세계화 시위에 밀려 무산된 경험이 있었다. 2년 후, 제4차 WTO도하각료회의에서 개발중심의 협상을 합의하였고, 이것이 DDA의 시작¹⁾이 되었다.

또한 도하에서는 중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후 농업협상은 협상기본지침(modality)을 만들기 위한 시도의 연속이었다. 2003년 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인 하빈슨은 농업협상기본지침을 준비하기 위한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다만, 칸쿤회의를 전후하여 인도, 브라질 등 수출개도국이 G20 (Group of 20)²⁾을 결성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G-33으로 대표되는 개도국 특별품목그룹이 등장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큰 변수가 되었다.

최초의 의미 있는 합의는 다음해인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³⁾에서 채택된 기본 골격은 소위 7월 패키지(July frame work)이다. 동 기본 골격에 살이 붙이며 나아가서는 2005년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선언으로 이어진다.

2006년 들어 제네바의 협상가들은 홍콩에서 정한 시한, 즉 2006년 연내 종료를 위해 협의를 가속화했지만, 트라이앵글 이슈인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그리고 농업 국내보조 문제에 직면하며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WTO 사무총장 파스칼 라미

1) 다만 농업협상은 농업협정문 제 20조에 따라 1999년부터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2) 세계경제를 이끌던 G7과 유럽연합 의장국에 12개의 신흥국, 주요경제국들을 포함한 20개 국가의 모임.

3)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통상 2년마다 개최하는 각료회의인 그 중간에는 제네바 주재 상주대표부 대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는 일반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함.

(Pascal Lamy)는 7월에 DDA협상 중단을 선언했다.⁴⁾

한편, 농업협상그룹 의장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는 협상중단 선언 직전에 기본협상지침 초안(TN/AG/W/3)을 제출하고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다. 이를 기초로 2007년 4월과 5월에 의장문서(challenge paper)를 전회원국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2007년, 7월에는 농업 기본협상지침 2차 초안(TN/AG/W/4)을 공개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며 발전시켜갔다. 즉 괄호(bracket)의 수를 줄이면서 합의 진전을 모색했다. 이에 추진동력을 받아 일부에서는 2008년 여름에 DDA협상이 타결의 직전까지 갔었다고들 회고한다. 하지만 결국은 농업 기본협상지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DDA협상은 정체되었다. 가장 역동적인 논의를 유도했던 팔코너의장은 2008년 12월, Rev.4 (TN/AG/W/4/Rev.4)을 제시하고 2009년 4월에 물러난다.

Rev.4는 괄호가 없는 상세한 형태의 기본협상지침으로 약 180개 조문과 20여개에 달하는 부록과 첨부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과 2010년의 농업 협상은 일명 투트랙 접근을 통해, Rev.4 내용 중 일부 쟁점을 명확히 해석하는 동시에 타결 시에 제출할 양식(templet) 협의 등에 치중하였다.

2011년에 다시 타결을 시도했으나 주요국의 이견으로 무산되었으며, 사실상 협상은 중단 모드에 들어갔다.

한편, 2012년 하반기부터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각료회의 대비하여 무역원활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관리방안 등 조기 수확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⁵⁾이 진행되었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는 2013년 9월에 취임한 브라질 대사 출신의 WTO 사무총장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DDA협상은 2014년 말까지 작업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은 인도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을 문제 삼아 작업 계획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시한을 넘기게 된다. 다만 2014년 11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과 인도의 양자합의를 추인하고 작업 계획 시한을 2015년 7월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2015년 8월 현재, 상반기 내내 열띤 논의를 거친 후에도 작업 계획은 없다.

4) 2007년 다보스 포럼 계기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하여 4월에 협상을 재개함.

5) 농업 관련 발리패키지: TRQ 관리 투명성 제고 및 미소진 메카니즘 도입; 개도국이 현재 운용 중인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에 대해 통보 등 조건하에서 영구해법 마련시까지 분쟁 자제(평화조항), 수출보조 철폐 재확인,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의 감축기준 유지, 면화 관련 협의 강화 등임

9월부터 시작되는 제네바 협상은 금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 즉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 회의에서 개도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미국 등 선진국이 신속처리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등 지역협상으로 대안을 활발히 모색하는 가운데 지지부진한 다자협상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을 중심에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3. DDA협상의 전개와 변화하는 여건

14년의 세월을 빠르게 훑은 이유는 DDA협상의 전개 국면을 보기 위함이다.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2001년 도하각료선언 이후 2004년 기본골격까지를 협상 도입부로 본다면, 2005년 홍콩 각료회의를 거쳐 팔코너(Crawford Falconer)의장 주도로 2008년 말 Rev.4를 마련한 시점은 전개 국면이다. 각국의 요구와 이를 절충한 제안이 모두 펼쳐진 상황에서 타결되었어야 할 협상은 막판 주요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즉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약 6년 간 기존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뚜렷한 대안 없이 대치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타결할 유인과 절박함은 줄어들고 대체 수단과 타결이 곤란한 이유들은 늘어났다. 특히 수출국들 입장에서 관세 감축과 할당 확보 등의 실익제고는 양자 또는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RTA)의 배타적 호혜조치를 통하여 추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사실 국내 농업보조에 대한 규율과 규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부담스러운 과제이며 국내 농업보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다자규범은 UR농업협정문이 유일하다. UR협정문에서는 모든 회원국 시장개방의무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진국은 6년(1995~2000), 개발도상국은 10년(1995년~2004년)동안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현재까지도 선진국은 2000년 개방 수준을, 개발도상국은 2004년 개방수준을 새로운 조치 없이 유지하고 있다.

수출 보조는 홍콩에서 2013년 말을 시한으로 폐지되었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지금도 그 부담이 크지는 않다. 다만, 미국은 수출 보조 이외에도 수출 신용과 식량 원조 등 수출 경쟁 분야의 추가 규율에서 잃는 것에 비해 얻을 것이 불분명하다. 물론 개도국의 입장에서, DDA출범 당시의 개발 중심 취지를 구현하고 UR로 인한 불균형을 시정해야만 선진국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4. 2015년 상반기 논의 동향

2015년 상반기는 기존의 소강 국면과 구별된다. 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안 논의를 구체화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상반기 농업협상 관련 제안서 등 협상문건은 총 10여건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협상 모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협상그룹 의장 존 아당크(Johe Adank)와 WTO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는 1월 말부터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개최하여 핵심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협의를 촉진하였으며, 이해당사국들은 7월 말까지 작업계획(Post Bali work program)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사항과 제안을 문서로 제출하였다.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Rev.4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며, 보다 간결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대수준(level of ambition)을 조정(recalibration)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금년 12월 나이로비에서 조차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DDA협상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적 압박으로 심화되는 양상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와 예외사항을 폭넓게 허용하면서 농업협상기본지침의 초안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주장과 2008년에 비하여 국제 농산물교역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주장이 주된 논거가 되고 있다.

특히 농업보조분야는 중국을 특정하여 신흥개발도상국이 달라진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만, 미국도 일정부분 보조 감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 중국 등은 기대수준 조정이라는 것은 모호하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와 전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협상은 농업분야 전반(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을 동시에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하며, 그 기준은 Rev.4와 대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국내 농업보조와 관련하여 중국은 WTO가입 협상에서 타 개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수용했고 Rev.4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 가입국(RAM)에 대한 규정⁶⁾을 두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의 추가부담은 절대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6) 제 12조: OTDS 한도가 신규가입 협상에서 확보한 de minimi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됨

4.1. 분야별 제안서 주요 내용

4.1.1. 시장 접근 분야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2월말 파라과이 제안서와 5월 말에 나온 농업협상그룹 의장 의견서가 대표적이다. 그 동안 농산물분야 관세감축의 원칙은 높은 관세를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관세 수준별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대별로 감축률을 달리하는 한편, 관세 상한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계적 적용에 대한 예외조치로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념을 인정하되 전자는 보상을 전제로, 후자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하여 그 범위와 요건, 조치 등을 협상하여왔다. 파라과이 제안은 구간별 감축(tiered approach)이 아닌 평균 및 최소 감축률을 준수한다면 실제 품목별 감축수치는 일단 회원국이 스스로 정하여 제시(initial offer)하는 방식이다. 과거 UR방식과 유사하며 최초제안을 출발점으로 2개월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의를 거쳐 최종양허표를 작성하자는 주장이다.

선진국은 평균 54%(최소 20%), 개발도상국은 평균 36%(최소 15%)를 감축하며 양허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감축의무⁷⁾가 면제된다. 한편, 민감품목은 전체의 5%를 대상으로 최소 감축률을 10%로 낮게, 개발도상국 특별품목은 12%를 대상으로 최소 감축률 10%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국내 소비량의 5%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지만 4월 중 비공식협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즉, 민감품목과 개발도상국 특별품목이라는 카테고리를 삭제하고 관세감축 공식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최소 감축률을 15%로, 개도국은 10%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5% 품목 범위에서 감축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10% 미만의 양허관세에 대한 감축의무 면제조항도 없었다.

존 아당크 의장의 문건은 농산물과 비농산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분야 관세감축 간의 수평적 연계에 주목하면서, 농업분야의 구간별 감축, 비농산물의 스위스 공식이 2008년 협상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다만, 2008년 협상지침 초안에 담긴 내용을 기초(building block)로 대안을 검토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Rev.4 구간별 감축

7) 지발적으로 감축할 경우에는 전체 평균 달성을 위한 감축 실적에는 반영함

공식을 따르되 구간과 감축률을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Rev.4의 구간별 감축 공식을 먼저 적용한 후에 그 결과를 출발점으로 전체 평균 관세의 감축(cut of average)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셋째, 출발점은 두 번째 방식과 같이 하되 세 번의 구간별 감축률 평균(average cut, UR감축 사례)을 택하는 방안이다.

한편, 알젠틴은 가장 먼저 2월에 DDA협상의 문제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협상지침 공식을 먼저 만든 다음 품목별로 감축률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후, 협상지침 공식 없이 처음부터 국가별 양허협상을 통해 상호 기대수준과 요구수준을 맞춰가는 방식(Request and offer)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열대작물에 대한 시장접근, 개발도상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관련 G-33 등 의견서,⁸⁾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ssociates, ACP)가 제출한 2건의 제안서 등도 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4.1.2. 국내 농업보조 분야

국내 농업보조 분야는 정치적 민감한 분야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은 미흡한 가운데 최근 당면한 게이트웨이(gate way)이슈로 불리면서 협상 전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그룹(Cairns Group),⁹⁾ 그 중에서도 호주와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 호주와 캐나다가 공동으로 주요 5개국(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의 농업보조 수준을 현행 농업협정문 허용상한과 대비하여 간격(overhang)이 매우 크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액(감축 대상 AMS+ de minimis)의 향후 2030년까지의 추세치, 2015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방안, Rev.4를 적용하는 방안, 2015년 대비 감축(미국 60%, 중국 40%) 방안 등을 비교하여 절대금액으로 상한을 설정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 당장 큰 무리 없이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정개혁을 담보할 대안을 찾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노르웨이는 국내 보조협상 또한 UR방식을 통해 기대수준을 낮추고 단순화하

8) 주요내용으로는 △UR 농업협정 불균형 시정, △농업협정 제20조에 반영된(built-in) 농업개혁, △개도국 우대(S&D)로 SP, SSM △July Framework, 홍콩 각료선언 등 기존 위임사항 존중, △SP, SSM은 관세감축과 분리(stand-alone) 등.

9) 농산물수출국 중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13개국의 모임(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표 1 주요국 농업보조 WTO통보 및 농업협정 상한 대비 여유분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농업생산액(A)	3,966억 달러	4,862억 달러	9,501억 달러	2,087억 달러	1,980억 달러
AOA 상한* (AMS + DM)	587 (191+A*0.1)	1,434 (948+A*0.1)	1,615 (A*0.085*2)	417 (A*0.2)	405 (9+A*0.2)
최근 통보** (AMS+DM)	121	142	186	17	24
여유분 *_** (overhang%)	466 (21%)	1,292 (10%)	1,429 (12%)	400 (4%)	381 (6%)
통보연도 (인도 A: '07)	2012	2011/12	2010	2009/2010	2012/13

자료: JOB/AG/40에서 발췌, 일부 수정함

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DDA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하려는 무역왜곡총액보조 (Overall Trade-Distorting Support, OTDS) 및 품목별 상한(Blue Box)을 포기하고 기존 규율 을 대상으로 감축수준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AMS의 경우 EU와 일본은 30%, 기 타 선진국¹⁰⁾ 20%, AMS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¹¹⁾은 13.3%를 감축한다.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특정품목에 한해 감축하며 선진국 20%, 개도국 13%를 줄인다. 블루박스 지급 상 한을 신설하되 선진국은 기준 년도(1995-2000년) 평균 농업 총생산액 대비 5% 또는 그 기간 연평균 지급실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은 기준년도(1995-2000년 또는 1995-2004 년 중 택일) 평균농업 총 생산액의 5%로 한다.

표 2 국내 보조관련 노르웨이의 제안서와 Rev.4 관련 규정 비교

	Rev.4	노르웨이 제안서
AMS 감축	EU : 70% 미국, 일본 : 60% 다른 선진국 : 45% 개도국 : 30%	EU, 일본 : 30% 다른 선진국(8개국) : 20% 개도국(8개국*) : 13.3%
품목불특정 de minimis 감축	선진국 : 50% 개도국 : 33.3%	선진국 : 20% 개도국 : 13%
Blue Box 한도	선진국 : 1995~2000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2.5% 개도국 :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	선진국 : 1995~2000년 블루박스 평균지급실적 또는 평균농업총생산액의 5% 중 높은 것 개도국 : Rev.4와 동일

10) 미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1) Rev.4상 감축의무: 한국,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남아공, 이스라엘, 태국, 대만.

4.1.3. 수출경쟁 분야

수출경쟁 분야는 지난 2월, 케언즈그룹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Rev.4규정을 사실상 그대로 합의하자고 주장을 한 바 있다. 논란이 많은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숙성된 영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수출신용, 식량원조 관련 Rev.4 규정에 대해 유보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일본, 스위스,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 등은 현 농업협정문 12조에 있는 수출금지 및 제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수출제한 관련 제안서¹²⁾를 회람한 바 있다.

5. 평가와 전망

사안의 특성상, 본고에서 개별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대체적으로 2015년 상반기 제네바 분위기는 Rev.4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Rev.4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대안 모색은 어쩌면 불가피할지 모른다. 지난 14년간의 논의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또 어떤 것을 남길 것인지가 핵심일 것이다. 만약 선진국이 기대수준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미 확인된 개도국 우대와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선진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전개된다면 다시 치열한 공방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협상타결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한 것은 전반적으로 합의수준을 낮추고 이를 위해 과거 UR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다. 가변적인 상황인 만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별 우리의 이익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과 대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지난 14년이 밀도를 달리하며 흘렀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 역시 미리 예측되는 상황전개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국가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사이트

WTO (www.wto.org)

12) 수출제한조치의 사유 통보 농업위원회의 역할 강화, 수출제한조치의 최대적용기간 규정, LDC 및 NFDC에 대한 수출제한 금지 등이며 Rev.4 관련 조항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함.